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65

발의연월일: 2021. 2. 24.

발 의 자 : 안병길 · 황보승희 · 하태경

전봉민 • 이주환 • 장제원

서병수 · 김미애 · 김희곤

이헌승 · 김도읍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진료비용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, 오히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. 특히 동물병원이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 과잉·과다청구, 수 배에 이르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 등의문제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법·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언론보도 및 국민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음.

이러한 진료비 부담 등으로 유기·유실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 및 비용이 유발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음(2019년 기준, 유기·유실동물 13만5,791마리가 발생하였으며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연간 23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).

또한, 사람의료의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해 발생 가능한 증상,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,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고 있으나, 수의료(獸醫療)의 경우 해당 절차의 부재로최근 다수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수의사와 보호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.

실제로 최근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수술 중 동물에게 탈취제를 분사하는 등의 학대행위로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르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,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있음.

이에,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가 수술, 수혈,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,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4 및 제20조의3 신설, 제30조제2항).

##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진료행위에 관한 동의)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, 전신마취를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명, 동의 및 고지의 내용,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3(진료비 게시 등)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여야한다. 이 경우 게시를 요하는 진료항목 범위, 게시 방법, 게시 장소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비 게시를 위해 진료항목, 질병명 등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"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"를 "제12조의4제1항,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조의3제1항의"로 한다.

## 부 칙

-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의3제 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  - 1. 2명 이상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
  - 2. 1명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: 공포 후 2년이 경과 한 날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12조의4(진료행위에 관한 동의)
	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
	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
	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,
	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동물 소
	유자등에게 설명하고 서면(전
	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동
	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설명
	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
	등이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
	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
	<u>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</u>
	<u>아니하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설명, 동의 및
	고지의 내용, 방법·절차 등 필
	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
	으로 정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20조의3(진료비 게시 등) ① 동
	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소유자
	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빈
	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
	를 게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
	게시를 요하는 진료항목 범위,

제30조(지도와 명령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 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·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 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 록 명할 수 있다. 

 게시 방법, 게시 장소 등 필요

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

 로 정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진료비 게시를 위해 진료항목, 질병명 등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0조(지도와 명령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2 조의4제1항, 제17조의3제1항부 터 제3항까지, 제17조의4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·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 도록 명할 수 있다.